

2021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저소득 노동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연리 1.5%, 최대 2,000만원 한도 융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근로형태별	융자 신청 대상
정 규 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인 노동자
비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소득요건 비적용 * 다만,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 (신청 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 외국인 · 재외동포

융자종류 및 한도액

융자종류	신청요건	한도액
의 료 비	노동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부 모 요 양 비	노동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상자 인당 연 500만원)
장 례 비	노동자 본인, 배우자, 노동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혼 례 비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 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	1,250만원
자 녀 학 자 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000만원 한도 (자녀 당 연 500만원)
임금감소 생 계 비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로 중 일 것)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내)
소 액 생 계 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186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자 녀 양 육 비	만 7세미만의 영 ·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1,000만원 한도 (자녀 당 연 5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융자조건

- ◆ 연리 1.5%
-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문의·상담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복권위원회

이 사업은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 · 지원됩니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고객님의 신뢰받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